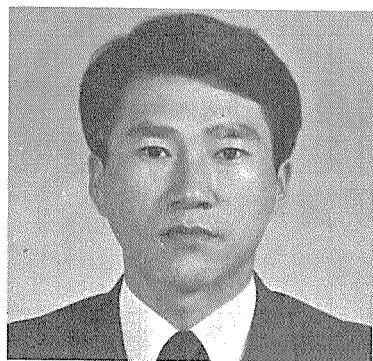


貿易委員會 機能과 產業被害救濟制度 및 國內 重電機業界의 現實



商工部 貿易委員會
電氣 技佐
李 海 平

I. 序 論

우리나라는 그동안 '80년대의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속에서도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으로 '86년에 처음으로 46억달러의 國際收支 흑자를 示顯한 이후 '88년에는 14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總貿易 규모에 있어서도 1,000억달러를 초과하는 등 세계 제12위의 貿易大國으로 成長하여 國際經濟社會에서 그 위치와 比重이 크게 擴大되었다.

이렇듯 우리경제의 位相이 格上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 交易相對國으로부터 市場開放 壓力이 加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持續적인 貿易擴大와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해서는 市場開放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꾸준히 輸入自由化를 擴大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輸入自由化는 輸出入期別公告, 輸入先多邊化制度, 彙力關稅制度등 事前的 인 輸入管理制度의 적절한 활용을 전제로 한 것이며 高率의 關稅와 낮은 讓許로 인해 實제로 國內產業被害는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國際收支 흑자 달성과 貿易規模의 확대에

따라 지난해末로 開途國 優待 條項인 GATT 第18條 B項의 適用國으로부터 卒業을 하게됨에 따라 현재의 開途國型 事前的 輸入規制措置는 철폐되어야 함은 물론 殘存輸入制限品目도 '97년 6월말까지는 단계적으로 輸入을 自由化해야 하는 등 實質적인 市場開放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금년말로 時限이 다가온 GATT 체제내의 우루과이 라운드(UR) 協商이 農畜產物, 서비스 및 知的所有權 등의 市場開放, 세이프가드, 反덤핑 및 關稅·非關稅 障壁 제거등 1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協商結果에 따라 평균관세율이 대폭적으로 인하되고 당초 계획에 비해 開放品目이 크게 확대되고 開放時期도 예정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國內 產業의 被害가 急增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해 볼때 그동안 產業保護政策에 의해 保護를 받아왔던 國內 重電機產業도 輸入으로 인한 심각한 被害가 우려되는 바, 國內 重電機 產業의 안정적 立地構築을 위해서는 技術開發과 生產性 向上을 통해 對外競爭力を 提高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產業被害救濟制度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輸入으로 인한 產業被害를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II. 우리나라의 產業被害 救濟制度

產業被害救濟制度는 貿易去來 形태별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公正去來(Fair Trade)에 의한 產業被害 救濟制度와 不公正去來(Unfair Trade)에 의한 產業被害 救濟制度로 前者는 GATT 第18條와 第19條의 규정에 근거를 둔 緊急輸入制限措置(일명 Safe-Guards)이며 後者는 GATT 第6條의 규정에 근거한 反덤핑 및 相計關稅부과조치로 國내법에는 對外貿易法과 關稅法에 도입 운용되고 있다.

종전에 우리나라의 輸入規制措置는 輸出入期別公告, 輸入先多邊化制度, 緊急關稅等 개도국형의 事前的 수입관리제도를 활용하여 輸入에 따른 산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나라의 國제적지위 향상과 輸入

開放化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전과 같은 事前的 輸入規制措置는 國제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交易相對國들로부터는 通商壓力을 받게 되었다.

특히 작년말로 개도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例外的輸入制限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개도국 優待條項(GSP)인 GATT 第18條 B項의 적용國으로부터 卒業을 하게 됨으로서 개도국형 輸入規制는 더이상 불가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는 개도국형의 事前的 수입규제조치에서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事後的으로 數量制限이나 反덤핑關稅를 賦課하는 선진국형 산업피해 구제제도로 輸入管理制度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GATT 第18條 B項의 적용國으로부터 多者間 公正貿易 振興, 無差別主義(Non-discrimination), 雙務主義에 의한 쌍방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GATT 第11條 적용국으로의 이행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產業被害救濟制度 중 가장 일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는 GATT가 인정하는 輸入急增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와 덤핑輸入에 의한 산업피해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두가지 절차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겠다.

1. 輸入急增으로 인한 產業被害 救濟節次

가. 調查 申請

對外貿易法 第32條-第34條 및 同法 施行令 第64條-第78條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한 물품의 輸入 數量 急增으로 인하여 同種의 物品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實質的인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 產業被害調查를 申請할 수 있으며 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商工部 貿易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당해국내산업에 利害關係가 있는 자로서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生產量 또는 企業 수의 비중이 30% 이상인 生產者 및 이들로 구성된 協會, 組合 또는 產業別 勞動組合이 신청할 수 있으며 關係行政機關의 長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해 물품의 輸出者, 輸入者와 系列關係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당해물품의 輸入者인 生產者는 신청자격이 없다.

나. 調查實施

産業被害調查 申請이 접수되면 貿易委員會는 신청인 자격과 서류를 심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調查開始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申請書 및 證憑資料가 미흡하여 기간을 정하여 申請人에게 補完을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또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審查한 결과 특정한 물품의 輸入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被害를 받거나 받을 憂慮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는 신청을 棄却할 수 있다.

調査開始 결정이 나면 貿易委員會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調査團을 구성하여 産業被害 여부를 조사한다.

調查方法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문지 조사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檢證을 위해서 現地調査를 실시하며 爭點事項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公聽會를 開催한다.

이러한 調査節次를 거친 후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20일이내에 被害有無를 판정하게 되는데 理解關係人이 요청할 경우 또는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는 120일 기간내에서 調査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기간중 신청인의 申請撤回시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合意가 이루어진 경우는 조사가 종결되며 조사기간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國內産業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輸入數量制限 등暫定조치를 建議할 수 있다.

다. 産業被害 有無 決定

輸入急增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유무를 결정할 때에는 특정물품의 輸入數量 急增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사실 및 특정물품의 輸入과 국내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 분석한다.

여기서 실질적 피해에는 공장폐쇄등 생산설비의

상당한 유 휴가 있어야 하며 상당수 업체가 합리적인 利潤水準에서 國內生產活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그리고 상당한 失業 또는 不完全 雇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실질적 피해우려 여부는 國內生產, 販賣, 利潤, 市場占有率, 稼動率 등의 減少 또는 在庫의 增加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라. 救濟措置 建議 및 施行

산업피해여부 결정은 貿易委員會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被害判定을 하며 산업피해 긍정판정이 날 경우는 피해판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商工部長官에게 輸入 물품의 수량 및 품질등에 관한 制限, 關稅率調整 및 기타 필요한 조치등을 建議할 수 있으며 구제조치 건의를 받은 商工部長官은 救濟措置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救濟措置는 전의한 날로부터 또는 협조요청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救濟措置를 決定, 施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國際通商關係 및 国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1)은 輸入急增으로 인한 産業被害 救濟節次圖이다.

2. 僂평輸入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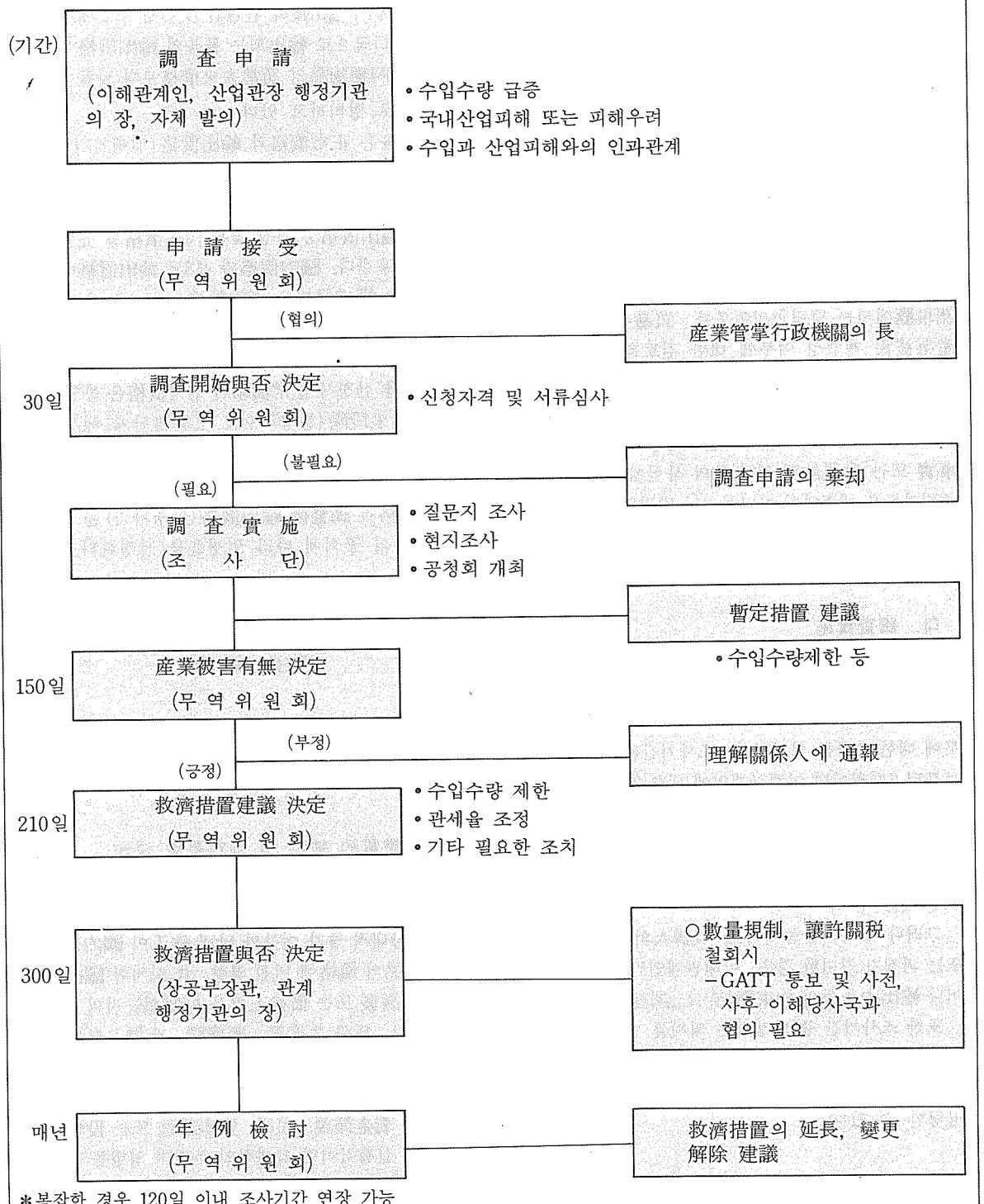
가. 調査申請

關稅法 第10條 및 同法 施行令 第4條에 규정되어 있으며 輸入急增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절차와는 달리 財務部가 신청창구로 되어 있고 조사절차도 關稅廳의 僂평調査와 商工部 貿易委員會의 산업피해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僂평防止關稅는 외국에서 正常價格 (Normal Value) 이하로 僂평판매되는 물품의 輸入으로 국내산업이 實質的인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개발이 實質的으로 遲延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保護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財務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산업에 利害關係가 있는 자, 즉 당해 輸入物品과 同種 · 同質物品 또는 類似物品의 国内생산자 및 이들로 구성된 協會, 組合등의

<표 1> 輸入急增으로 인한 產業被害救濟 節次圖



團體에 있으며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輸入物品의 輸出者, 輸入者와 系列關係 등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나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생산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나. 調査開始 決定

財務部에 덤핑防止關稅 부과요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부처의 調査開始 여부에 대한 검토와 關稅審議委員會 審議를 거쳐 본조사 개시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

조사개시 여부 검토 段階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인격 여부와 신청인 제출자료에 대한 審查를 하며 關稅廳에서는 덤핑협의여부를, 貿易委員會에서는 產業被害 개연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檢討結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關稅審議委員會는 본조사 개시 결정을 하지만 신청인의 자격이 부적격하거나 關稅賦課 신청서 및 덤핑輸入事實 또는 實質的인被害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덤핑差額, 덤핑輸入物量 또는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경우는 申請을 棄却하고 調査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調査實施

關稅審議委員會에서 본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關稅廳에서는 價格調査를 통한 덤핑마진율을 산정하고 商工部 貿易委員會에서는 국내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이해관계인에 대한 質問紙 調査, 現地調查, 公聽會 開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덤핑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 또는 이해관계인 요청시는 調査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기간중이라도 申請人의 申請撤回시 또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이해관계인간의 價格修正이나 輸出中止등의 約束締結시는 調査가 종결된다.

또한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暫定dumping防止關稅를 賦課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라. 덤핑率 算定

국내 關稅法은 덤핑을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正常價格이하로 판매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GATT 第6條와 관련된 反dumping 코드에서는 일국에서 타국으로 輸出되는 물품의 輸出價格이 수출국내의 同種物品의 通常去來價格보다 낮을 경우를 덤핑으로 정의하고 있다.

덤핑율은 正常價格과 輸出價格(dumping가격)의 差額에 따라 결정되는데 正常價格은 輸出國內의 同種物品의 通常去來價格을 말하며 國內價格이 없으면 제3국 輸出價格 중 가장 높은 代表價格을 正常價格으로 이용한다. 國內價格과 제3국 輸出價格이 없을 경우에는 構成價格을 正常價格으로 쓰는데 이 構成價格은 製造原價에 합리적인 수준의 一般管理費 및 販賣費와 利潤을 加산한 價格이다.

덤핑을 산정시 正常價格과 덤핑價格은 동일한 時期와 去來段階(통상적으로 工場渡 단계)에서 비교를 하며 이때에는 물리적인 特性, 販賣數量, 課稅上의 차이등에 따라 價格을 調整하며 이를 조정후 正常價格과 調整後 輸出價格(dumping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따라 덤핑율을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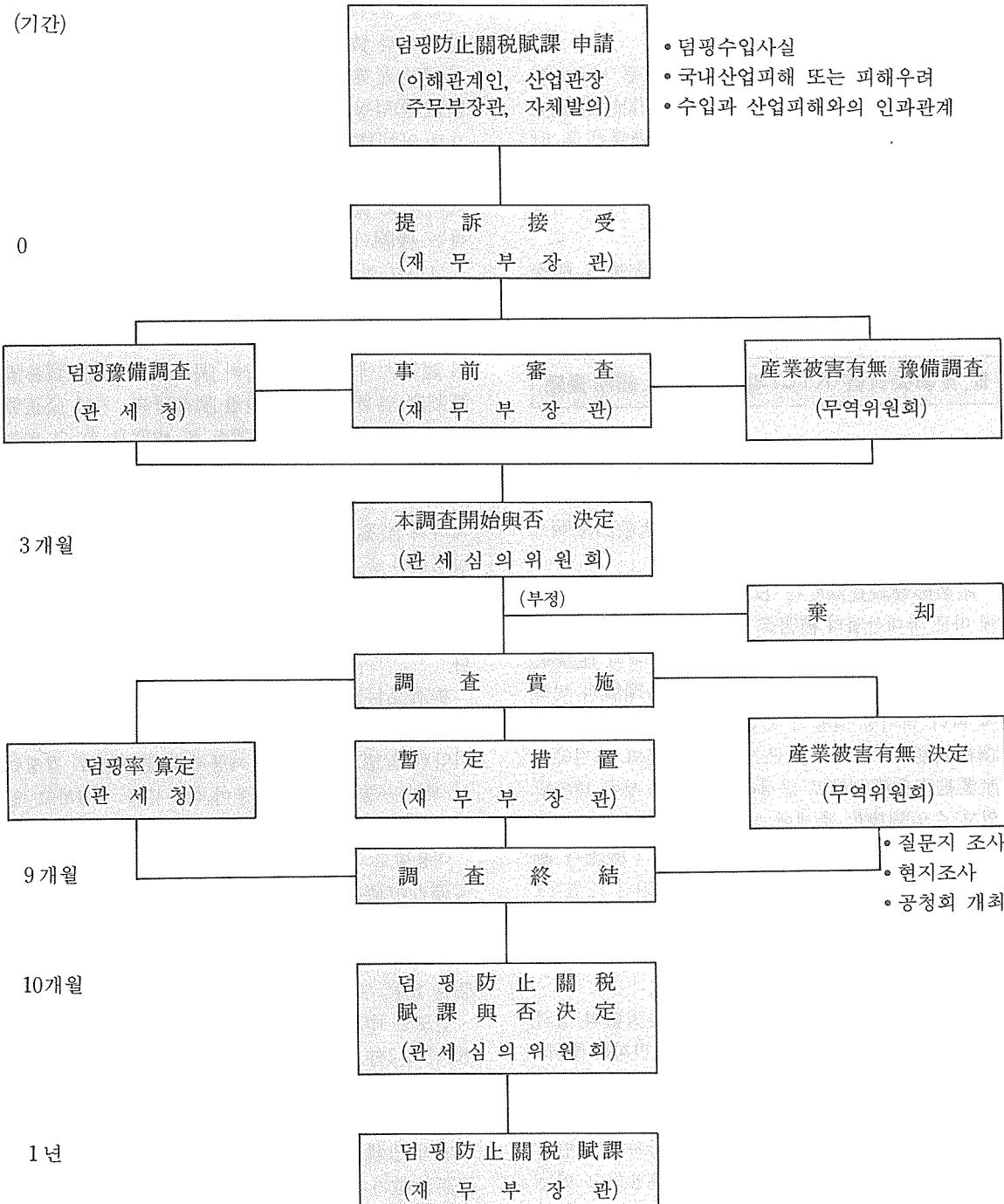
$$\text{덤핑率} = \frac{\text{調整後 正常價格} - \text{調整後 輸出價格}}{\text{調整後 輸出價格}} \times 100(%)$$

위의 덤핑율 계산과정에서 負(-)의 덤핑差額은 0인 것으로 간주하고 덤핑差額이 陽(+)인 경우에만 加重平均하여 덤핑율을 산정한다.

마. 實質的被害 및 被害憂慮 決定

당해물품의 덤핑輸入으로 인한 國내 產業의 실질적被害 결정시는 調査對象 물품의 輸入物量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여부와 당해 輸入이 國내市場의 同種物品의 價格에 미친 영향, 즉 현저한 國내價格下落을誘發 또는 價格上昇을 抑制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生產高, 販賣額, 市場占有 rate, 利益, 生產性, 投資收益率 또는 操業度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低下, 國내價格에 영향을 주는 要因 및 資金循環, 在庫, 資本調達 또는 投資能力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등과 같은 당해 산업의 상태에 관계가 있는 모든 적절한 경제적

(표 2) 덤핑輸入으로 인한 產業被害救濟 節次圖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 가능.

요인과 指標에 대한 評價를 통해 國內產業에 결과적으로 끼친 영향을 검토하여被害有無를 결정한다.

바. 救濟措置

救濟措置는 調查가 중단 또는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關稅審議委員會가 덤핑防止措置의 필요여부 및 措置內容에 관한 사항을 審議한 후 財務部長官에게 제출하며 財務部長官은 正常價格과의 덤핑價格과의 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덤핑방지 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표2)는 덤핑輸入으로 인한 產業被害救濟 節次 圖이다.

III. 貿易委員會(KTC)의 機能 및 運用實績

貿易委員會(Korean Trade Commission)는 '87년 7월 제정된 대외무역법상의 근거로 수입에 의한 產業影響調查制度를 통한 產業被害救濟機關으로 발족되었다.

產業影響調查制度는 '80년 들어 輸入開放擴大에 따른 국내산업의 被害를 조사 및 구제조치를 강구하자는 趣旨에서 新設, 導入된 개도국形의 產業被害救濟制度로서 우리나라의 對外貿易環境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활용이 곤란한 입장으로 產業被害調查制度의 GATT상 근거를 第19條의 선진국形 產業被害救濟制度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수입開放化 추세에 따른 國內產業의 被害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그 機能과 組織의 확대개편의 필요성이漸增하여 '89년 12월 改正된 對外貿易法에서 기능이 대폭 보강되었으며 '90년 4월의 職制改編으로 貿易委員會의 法적 성격과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다.

改正된 對外貿易法에 규정된 貿易委員會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무역위원회는 學界, 言論界, 法曹界등의 각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商工部傘下 準獨立, 準司法的 合議制 行政機關이며 그 밑에 調査 및 事務局 업무를 담당하는 50인의 要員으로 조직된 貿易調查室이 설치 운용되고 있는 특정물품의 輸入등에 의한 國內產業의 被害를 調査, 判定 및 救濟措置를 建議하는 產業被害救濟機關

이다.

產業被害救濟機關으로서의 貿易委員會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①특정물품의 輸入急增 또는 외국인에 의한 貿易, 流通, 서비스의 供給急增으로 인한 國內產業의 被害를 調査, 判定 및 救濟措置를 建議 ②덤핑 또는 補助金을 지급받은 물품의 輸入으로 인한 國內產業被害의 調査 및 判定 ③知的所有權 侵害 物品의 輸入等 不公正輸入行爲로 인한 國內產業被害의 調査, 判定 및 救濟措置를 建議하는 機關이다.

그리고 이러한 產業被害救濟業務 뿐만 아니라 國際貿易關聯 각종 調査 및 分析, 研究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정물품의 輸入이 國內產業의 競爭力에 미치는 영향의 調査分析, 國際貿易規範制度 및 紛爭事例에 관한 調査研究, 기타 公正貿易 조장을 위한 일반적 調査 및 建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87년 7월 貿易委員會가 설치된 후 '90년 8월 현재까지 產業被害調查申請, 調査 및 救濟現況을 살펴보면 총 17건의 조사신청中 조사가 완료되어 救濟措置가 행해진 건수는 8건이며, 調査中止가 5건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건수는 4건에 이르고 있다.

提訴品目別로는 工產品中 부품, 소재류 및 정밀화학 분야등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거나 產業定着이 미약한 有望, 幼稚產業 제품과 構造的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農·축·수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輸入急增으로 인한 產業被害調查申請은 13건이 들어와 調査完了 및 調査가 中止된 것이 11건, 조사중이 2건이며 덤핑輸入으로 인한 產業被害調查申請 건수는 4건이며 이중 조사중지 2건, 조사가 진행중인 건수는 2건이다.

연도별 申請現況은 '87년에 1건이 접수되었으며 '88년에 4건, '89년에 8건으로 꾸준히 增加추세에 있으며 '90년 들어 提訴件數가 8월 현재 4건에 불과했으나 輸入開放 확대와 事前的 輸入管理制度의 접진적 철폐 및 貿易委員會의 기능 활성화에 따라 提訴件數가 急增하고 工產品을 비롯 農畜水產物, 知的所有權 등 提訴品目에 있어서도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90년 8월 현재까지의 產業被害調查申請, 調查 및 救濟措置의 사례별 현황이다.

1. 調查中 : 4件

○輸入急增 : 2件

提訴日字	對象品目(提訴者)	調査開始決定	被害判定	救濟措置建議
'90. 3. 6	코코아분유 (한국유가공협회)	'90. 4. 3	'90. 8. 20 한 (조사기간연장)	'90. 10. 19 한
'90. 5. 9	나무젓가락 (韓國木割箸組合)	'90. 6. 8	'90. 10. 6 한	'90. 12. 5 한

○dumping輸入 : 2件

提訴日字	對象品目(提訴者)	調査申請接受	調査開始決定	被害判定
'89. 10. 6	폴리아크릴아미드 (이양화학)	'89. 10. 20	'90. 2. 20	'90. 10. 20 한 (공청회 : 8월 30일 예정)
'90. 5. 8	폴리아세탈수지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90. 5. 22	'90. 8. 25	'91. 2. 25 한

2. 調査完了 : 8件

○輸入急増 : 8件

提訴日字	對象品目(提訴者)	被害有無判定	救濟措置建議	救濟措置內容
'88. 3. 31	양고라토끼털 (한국양토협동조합)	'88. 10. 28 (긍정판정)	'88. 12 : '89국산품 구매합의 '90수입가격과 의 차액보전등	○구매합의 ○농수산부 추진중
'88. 7. 1	새우젓 (수산업협동조합)	'88. 12. 27 (긍정판정)	'89. 2 : 수입제한, 구조조정	○수입제한 - 수산청장 추천
'89. 5. 17	고추가공제품 (농업협동조합)	'89. 9. 28 (긍정판정)	'89. 9 : 고추장 수입제한	○수입제한 - 보사부장관 추천
'89. 7. 24	돼지고기통조림 (한국육가공협회)	'89. 12. 19 (긍정)	'90. 2 : 관세율 인상 - 30% - 60%	○관세율인상 - 30% - > 50%
'89. 8. 8	집성운모절연제품 (대한마이카)	'89. 12. 23 (긍정판정)	'90. 2 : 국산품 우선구매	○추진중
'89. 8. 26	스테아린산 (비누세제협동조합)	'89. 12. 2	'90. 2 : 수입물량 자율조정	○조정중
'89. 8. 31	초산에틸 (한국알콜산업)	'89. 12. 23	'90. 2 : 양업계간 수입물량 자율조정	○양업계 합의
'89. 11. 1	L-LDPE 필름 (크린랩)	'90. 3. 20	'90. 5 : 관세율인상 건의 - 13% - > 33%	○재무부조치 요청 ('90. 6. 2)

다음은 主要國의 產業被害 救濟機關을 比較한 것이다.

○ 產業被害救濟機關 比較

區 分	美 國	카 나 다	臺 州	E C	韓 國
機 構	國際貿易委員會 (USITC)	國際貿易審查委員會 (CITT)	產業支援委員會 (IAC)	EC 執行委員會 (DGI)	貿易委員會 (KTC)
性 格	大統領傘下 獨立規制委員會	財務部傘下 獨立規制委員會	商工技術省所屬 諮問委員會		商工部傘下 準獨立行政委員會
委 員 人 員	6名(常任) 472名	9名(常任) 100名	9名(常任) 240名	17名 100名	9名(常任) 50名
機 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業被害調查 및 救濟建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急增 - 덤핑(補助金支給) - 知的所有權侵害 등 不公正輸入 ○ 國際競爭力調查 ○ 貿易 및 關稅制度調查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世界交易商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業被害調查 및 救濟建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急增 - 덤핑(補助金支給) - 서비스 ○ 經濟, 貿易 關稅問題에 관한 一般的調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業支援業種 및 手段 建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3次 產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業被害調查 및 救濟建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急增 - 덤핑(補助金支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業被害調查 및 救濟建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急增 - 덤핑(補助金支給) - 知的所有權侵害 등 不公正輸入 - 貿易 및 流通 서비스 供給急增 ○ 輸入의 產業의 競爭力에 미치는 影響의 調査分析 ○ 國際貿易制度 및 紛爭事例 調査 ○ 不公正輸出入 行為 調査
救 濟 手 段	○ 關稅, 數量規制 및 貿易調整支援	○ 關稅 및 數量規制 등	○ 產業調整指定	○ 關稅 및 數量規制	○ 關稅, 數量規制 및 產業調整支援

* 救濟措置 決定 施行 : 大統領, 内閣 및 行政部處

3. 調査中止 : 5件

○輸入急增 : 3件

提訴日字	對象品目(提訴者)	調査中止	中止經緯
'87. 11. 24	세라믹암전착화소자(서형산업)	'88. 10. 20	생산·수요자간 구매합의로 조사종결
'89. 9. 27	압연기용롤(강원산업)	'89. 12. 7	신청철회
'90. 2. 20	우모분(단미사료협회)	'90. 6. 8	신청철회

○dump輸入 : 2件

提訴日字	對象品目(提訴者)	調査中止	中止經緯
'88. 6. 3	D. C. P 재심사(대화정밀화학)	'88. 12. 6	가격약속 연장제의 수락
'88. 8. 29	알루미나시멘트(유니온)	'89. 8. 17	가격약속제의 수락

IV. 國內 重電機產業의 現實

國內 重電機產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内需·官納爲主型 成長產業이라 할 수 있으며 核心技術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을 自體技術보다는 해외에 의존해온 결과 基盤技術 축적이 미흡하고 品質 및 價格競爭力 등에서 對外競爭力이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의 輸入開放 압력이 重電機 분야에서도 강화되고 있는데 정부 調達協定의 가입 추진에 따라 内需市場 뿐만 아니라 官需市場까지도開放을 요구하고 있고 關稅協商의 결과에 따라 輸入 關稅率도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한편 國際市場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輸入規制強化 움직임, 市場 불록화 현상, 國際收支 불균형에 따른 각국의 新保護貿易主義 경향 및 동남아 등 後發開途國의 世界市場의 본격적인 참여 등 對內外적인 여건의 악화로 國內 重電機 產業은 점점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重電機 技術 開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國내 重電機 製品의 國際 競爭力 향상을 통한 對外 지향적 輸出產業으로의 轉換을 꾀하고 있고 協會나 組合을 중심으로한 国内 업계에서도 技術開發投資 및 生產性 向上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1. 需給動向

최근 重電機產業은 工場自動化 및 設備自動化에 따라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종래의 回轉機器, 静止機器 및 電線, 케이블 등의 범용 重電機器 뿐만 아니라 電力 電子機器, 自動化關聯機器 및 超高壓 大容量 重電機器 등으로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國內 重電機產業은 製造業 전체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87년 기준으로 2.0%이며 交易規模도 우리나라 總貿易規模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4%에 불과하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國家基幹產業으로서의 위치를 굳혀왔다.

國內重電機 市場은 '89년 현재 그 규모가 46억불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生產, 輸入은 工場自動化 關聯機器, 電力變換機器 및 自動制御盤의 國內需要增加로 각각 연평균 17.1%, 18.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總供給 중 輸入이 차지하는 比重은 25.4%로 國內重電機 市場의 輸入依存度가 높은 편인데 앞으로는 輸入擴大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그 比重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內需는 연평균 19.4%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輸出은 國내 基盤技術 低位와 貸金引上, 원

〈國內 重電機產業의 需給現況〉

구 分		'83	'85	'87	'89	'90 (추정)	연평균 증가율	
							'83~'89	'89~'90
供 給	生 產	1,326	1,458	2,152	3,418	3,690	17.1	8.0
	輸 入	424	522	817	1,167	1,200	18.9	2.8
總 計		1,740	1,980	2,969	4,586	4,890	17.5	6.6
需 要	內 需	1,495	1,759	2,060	4,061	4,340	19.4	6.9
	輸 出	245	221	309	525	550	14.4	4.8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전기조합 생산통계

貨切上 등의 영향으로 그 성장세가 14.4%로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 있고 總需要 중 輸出이 차지하는比重도 11.4%로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輸入國, 輸出國과 主宗 品目을 살펴보면國內 製品의 輸出은 國내 變壓器, 電線, 電動機 등의 中級 品目을 동남아, 일본 및 미국 등으로 輸出하고 있는데 世界 市場에서의 國내 重電機 製品이 충분한 競爭力を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輸出市場과 品目이 다양화되고 있지 못하다.

輸入은 주로 일본, 미국製品으로 이를 두 나라에 대한 輸入比重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主宗 品目은 變換機器, 小型電動機, 配電制御盤 등의 自動化 관련 設備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對外競爭力

우리나라의 重電機器產業의 貿易規模는 '89년에 20억불 정도로 世界市場의 2.0% 수준을 점유하고 있으며 貿易特化收支가 '88년에 -0.35로 미국, 대만등과 비슷한 수준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劣位에 있다.

그동안 國내 重電機產業은 國내 電力需要에 따른 内需為主型 產業으로 급성장한 관계로 變壓器, 電力 케이블 등 中·低級製品은 어느 정도 對外競爭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나 送配電機器, 發電機 등의 大型·高級製品에 대해서는 競争力이 주요 競争國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는 '80년 후반부터 급격한 원화切上과 勞使紛糾로 인한 原價上昇등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製品設計技術, 素材 및 部品加工技術과 完製品 組立生產 技術등의 축적이 미흡하여 高級化,

多樣化되어 가고 있는 需要에 적절히 對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重電機器 분야의 生產性이 國내 製造業 平均水準을 상회하고는 있으나 일본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勞動生產性과 設備生產性은 일본의 절반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生產設備의 自動化 추진과 技術開發 投資의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할 수 있다.

3. 向後展望

현재 정부에서는 GATT의 政府調達協定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할 경우는 그동안 국내 업계가 독점하여 國內需要의 42%를 의존해오던 調達廳, 韓電, 通信公社등의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調達市場이 전면開放되어 저가 고품질의 선진國 製品이 밀려 들어와 國內市場 잠식율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고 UR라운드의 關稅協商 진전에 따라 重電機器의 輸入關稅率이 현행 13%에서 '92년에는 9%로 크게 引下될 展望이다.

또한 최근들어 深化되어 가고 있는 對日赤字幅의增加, 世界市場 Bloc화 현상등에 따른 輸入規制 강화 움직임 등 중전기산업의 대내외적 무역환경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전기 개별업체가 技術開發과 新製品 開發에 대한 투자를 擴大해야 하고 현재 추진중인 機械類, 部品, 素材 國產化開發과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 등 정부 支援事業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國產化率 提高 및 對外競爭力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 위주의 輸出市場도 동구권 등의 新市場開拓으로 輸出市場을 多邊化해 나가는

한편 凡用重電機器로부터 大型, 高級製品의 高附加價值製品으로 輸出品目도 多樣化해서 重電機器產業의 輸出注力產業化에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國產化開發完了 제품등에 대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低價 덤핑공세와 같은 不公正貿易行爲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등 產業被害救濟制度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내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V. 結論

產業被害救濟制度는 多者間 貿易規範인 GATT 정신에 의한 것으로서 公正貿易 및 不公正貿易으로 인해 자국내 產業이 被害를 입었을 때 자국산업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產業保護手段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產業被害救濟手段이 緊急輸入制限措置(Safe Guards)에서 反덤핑(Anti-Dumping)制裁措置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Safe guards는 덤핑이나 補助金 지급에 의한 輸入 등의 不公正貿易이 아닌 公正貿易으로 인한 產業被害救濟措置의 발동수단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發動要件과 發動節次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즉 提訴要件과 被害事實의 立證問題가 어렵고 救濟措置로서의 數量制限이나 讓許關稅 撤回時는 救濟措置 發動 전후에 GATT에 통보해야 함은 물론 利害當事國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救濟措置 후에도 상대방 국가로부터의 報復措置가 인정되기 때문에 救濟效果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Anti-dumping 提訴는 不公正貿易으로

부터 자국내 產業을 보호하겠다는 정당한 防禦手段으로 國際通商規範上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發動要件과 節次에 있어서 Safe guards보다 수월하고 救濟效果에 있어서도 反덤핑關稅 賦課는 輸入國內 輸入業者에게 關稅負擔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輸入을 規制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國제적 으로 不公正輸出國의 낙인이 찍히게 되어 덤핑 輸出國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세이프가드보다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국내업계에서도 特定物品의 輸入이 數量增加 현상도 나타나고 덤핑혐의도 존재할 경우는 가능하면 세이프가드보다는 反덤핑措置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救濟結果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輸入急增 또는 덤핑輸入 혐의가 있을 경우에 개별업체가 提訴하는 것보다는 同種商品을 生產하는 국내업체가 공동으로 協會나 組合을 중심으로 하여 提訴 및 對應하는 것이 유리하고 申請書의 작성과 자료준비 등에는 국내 反덤핑 및 세이프가드의 전문 변호사나 公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對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輸入開放化 시대는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을 그동안 内需市場에만 치중해 왔던 國內 重電機產業으로서도 외면할 수는 없다.

輸入開放 확대에 따라 처음에는 다소 침체가 예상되지만 꾸준한 技術開發 投資와 生產性 향상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重電機產業을 高附加價值 產業으로 육성발전시켜 内需市場은 물론 海外市場에서도 國內 重電機製品의 對外競爭力 확보로 빠른 시일내에 세계 10위권내의 重電機產業國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